

합병계약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상법 제5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합병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방법】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해산한다.

제2조 【목적】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서울교통공사’의 명칭은 ‘서울교통공사(영문명 Seoul Metro)’라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교통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자본금】

‘서울교통공사’의 자본금은 금19,376,731,375,013원(금일십구조삼천칠백육십칠억삼천일백삼십칠만오천일십삼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단, 합병기일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무상태에 의하여 자본금, 부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액 만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합병기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기일은 2017년 5월 8일 (예정)로 한다. 다만,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대표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직원의 고용승계】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은 합병기일에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고용승계 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은 합병기일 전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사업의 승계】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한 사업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합병기일에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사업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자산과 부채 및 그에 부대하는 권리·의무 일체는 합병기일에 ‘서울교통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서울교통공사’에 승계된 자산의 가액은 ‘서울교통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조 【자산의 실사】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을 위해 공동으로 자산상태를 실사한다.

제12조 【설립준비】

‘서울교통공사’ 설립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 등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서울교통공사’ 설립 시까지 운영한다.

제13조 【설립비용 및 해산비용】

‘서울교통공사’의 설립비용 및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비용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각각 부담한다.

제14조 【합병승인 이사회 기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3월 27일까지 각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 계약의 승인 및 그 밖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또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실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등】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재지변 혹은 그 밖에 ‘서울메트로’ 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산이나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 외 사항】

본 계약에서 규정한 이외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제18조 【기업결합신고】

본 계약은 공정거래법 제12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전제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각 이사회 승인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10일

(서울메트로)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법인명 : 서울메트로

대표자 : 김 태 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법인명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표자 : 최 용 운

